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7
----------	----

2014년 9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4년 9월 22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변화정책관 운영철)

- 가. 제안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와 관련된 조항의 조문형식을 보완하며,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와 관련된 조항의 조문형식 보완(안 제5조제 9호, 제6조제3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추가(안 제9조제2항제4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 동의
- (3)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정도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 3. 27~4. 16) 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 영 배)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기금의 용도 및 용자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5조제9호, 안 제6조제3항)

-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사업자 육성을 위한 자금을 본 기금에서 저리로 용자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문에는 “지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용자”로 하고 대상 재활용사업자를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민간전문가의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추가(안 제9조제2항제4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나 위원구성을 살펴볼 때 기금운용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기금운용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임.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안 제11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¹⁾는 2012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기금지원 대상 사업의 결정, 수혜자 선정과 같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음.

1)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p.22~24, 2012. 11

기후변화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목적**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등 촉진

- **설치년도** : '07. 10. 1
※ 기후변화 적극대응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사업기금”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용도 추가

- **운용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 일반회계 출연금 : '08~'11년 총 327억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기금조성 현황** ('14. 8.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기금총액	용자금	여유자금			
		소 계	공공예금	정기예금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104,153	39,403	64,750	1,350	33,500	29,900

※ 용자금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36,085), 태양광발전융자(2,102) 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평가대상 조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가능성(3-3)

□ 현 황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문 제 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미흡

- 법정 의무절차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 미흡

※ <참고4>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1회 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포함)를 거친 기금 수는 1,582개(81.4%), 회의록을 작성한 기금 수는 903개(46.5%)

○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흡

-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 <참고5>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대상 1,943개 기금 중 제척규정을 마련한 기금 수는 98개(5%), 기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3개(1.7%), 회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6개(1.9%)

□ 개선방안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 마련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예시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현 행	개정(안)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시2】 개별기금 설치조례

현 행	개정(안)
(신 설)	<p>제〇〇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p> <p>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p>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육성자금 지원”을 “육성자금 용자”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8. (생략)</p> <p>9. 재활용사업자 <u>육성자금 지원</u></p> <p>10. (생략)</p>	<p>제5조(기금의 용도) ----- -----.</p> <p>1.~8. (현행과 같음)</p> <p>9. ----- <u>육성자금 용자</u></p> <p>10. (현행과 같음)</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 (생략)</p> <p>② (생략)</p> <p>③ <u>제5조제9호의 사업 : 재활용사업자</u></p>	<p>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 ----- -----.</p> <p>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5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용자 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u></p>
<p>제9조(위원회 구성)</p> <p>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9조(위원회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u>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u></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u></p>

현행	개정안
	<p><u>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u></p> <p>② <u>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③ <u>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에서 제척하여야 한다.</u></p>